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법무과

1. 개요

일본의 공증제도는 1886년 공증인규칙과 함께 출범하였다. 본 규칙은 프랑스의 공증제도를 모델로 삼아 네덜란드법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공증인의 권한을 공정증서 작성에만 한정하였다. 현재의 공증인법은 독일(당시 프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1909년 제정되었으며, 동시에 1886년의 공증규칙은 폐지되었다. 그 후 공증인법은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과 아울러 사서증서 인증권한을 부여하였다. 공증인법은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1938년에는 회사정관 인증이 공증인의 역할에 추가되고, 1996년에는 선서인증제도(선서공술서) 작성이, 2000년에는 전자서명 및 확정일자 부여, 사문서 인증을 포함하는 전자공증제도가 추가되었다. 2002년에는 정관인증까지 확대되었다.

공증제도는 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 등의 성립시기를 밝혀서 사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전자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존의 '서면에 대한 공증'과 같은 기능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제147회 정기 국회에 「상업 등기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동 법률안이 2000년 4월 11일에 성립 및 4월 19일에 공포되어, 이를 통해 “공증제도에 기초를 두는 전자공증

제도”가 창설되었다.¹⁾

일본에서의 전자공증제도는 현행 공증제도에서 종이 문서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공증업무 중 ‘사서증서 확인’, ‘회사설립 시 필요한 정관의 인증’, ‘문서에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을 전자문서(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설한 것이다. 이를 “공증제도에 기초를 두는 전자공증제도”라고 한다. 이에 부수하여 전자공증센터를 통하여 전자적 기록의 보존 및 동일성 증명 등에 필요한 정보를 ‘20년간 보존’하는 것이나 ‘등본의 작성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²⁾

다만, 금전의 대차, 토지·건물의 임대차 등의 계약이나 유언서 등의 공정(公正)증서에 관해서는 현재 전자공시제도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2004년 3월 1일부터는 개인도 민간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이하에서는 일본의 전자공증제도를 개관하고 전자적 기록 인증의 촉탁, 확정일자의 부여 신청,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신청, 동일한 정보의 제공

신청, 업무의 중지 요청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자공증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일본 전자공증제도의 개관

1. 전자공증제도 도입의 경위

1) 전자거래의 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

일본에서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정보의 교신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실현되고,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거래를 하는 전자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⁴⁾ 또한 일본 정부에서도 1999년 12월에 결정된 밀레니엄 프로젝트 등에 따라 각종 신청 절차를 전자화하는 이른바 ‘전자 정부’의 실현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 전자 신청 절차의 실현을 위한 검토가 다방면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그 배경이다. 이러한 전자거



1) 운영은 2002년 1월부터 개시하였다고 한다. 일본공증인연합회홈페이지(<http://www.koshonin.gr.jp>) 참조.

2) 전자공증사무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전자적 기록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	11,000엔 (원칙)
	정관의 인증	50,000엔
일자 정보의 부여		700엔
전자적 기록의 저장		300엔
정보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		700엔
동일 정보의 제공		700엔 (서면 교부 : 1장당 20엔 가산)

3) 전병서,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연구, 2008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8.10, 44면 참조.

4)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참고 :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1-1.html>, 2013.9.10. 최종 방문.

래나 전자 신청에 있어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되므로, 정보의 작성자를 확인하고 정보 내용의 손실, 훼손 등을 방지 또는 손실, 손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기반으로 필수적이다.

2) 정보의 작성자 증명서 등에 의한 분쟁 방지의 필요성

전자공증제도는 정보 내용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정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전자서명과 전자서명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인증만으로는 전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손실 등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생성 정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정보의 존재·내용을 증명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전자공증제도이다. 동 제도에서는 공증인이 위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 TTP)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정부의 대처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은 ‘규제완화 추진 3개

년 계획’(1998년 3월 각의 결정),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방침’(액션 플랜, 1999년 4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 결정) 등에 포함되어 그 필요성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등 각계에서도 그 도입을 기대하고 있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1996년 7월에 “전자거래 법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고, 동 연구회는 전자서명제도 및 상업 등기에 기초를 두는 전자인증제도와 함께 전자공증제도의 검토를 실시하고 1998년 3월에 그 도입에 대한 제언(“전자거래 법제에 관한 연구회(제도 관계 소위원회) 보고서”)을 발표했다. 동 제언에 따라 법무성은 시스템 및 체제 정비 면에서 일본공증인연합회와 협의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입안 작업을 수행하여 현 제도의 도입에 이른 것이다.

2. 전자공증제도의 내용

총전의 공증제도는 공증인 모두가 동일 권한을 가지고 공증사무를 하였지만, 전자공증은 공증인 가운데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전자공증에 관한 사무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증인을 공증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바, 공증인 중에서 전자공시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자는 법무장관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지정공증인’이다.⁵⁾ 따라서 지정공증인만이 공증사무를 행한다(일본 공증인법 제7조의2 참조). 촉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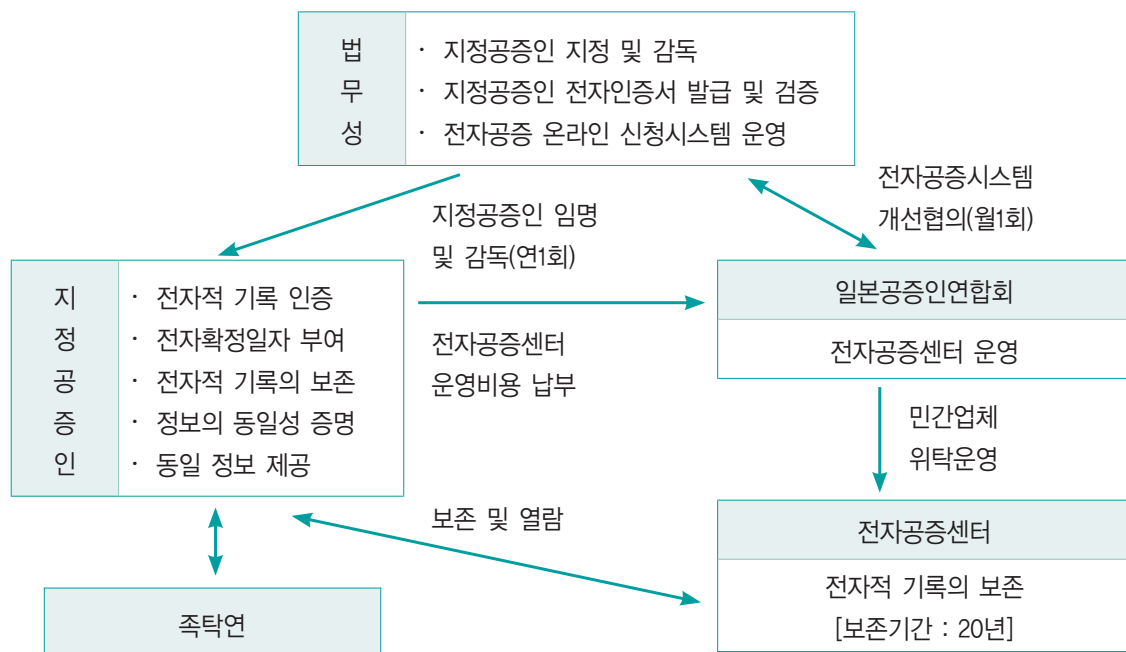
5) 지정공증인이 집무하고 있는 공증사무소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 소재지 일람’, 그리고 지정공증인의 소속·사무소명·성명에 대해서는 법무성 민사국(民事局) 홈페이지의 ‘지정공증인 일람’ 참조
 - ‘공증사무소 소재지 일람’: <http://www.koshonin.gr.jp/sho.html>
 - ‘지정공증인 일람’: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2.html>

과 지정공증인이 주고받은 전자정보는 ‘공개 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에 근거하여 전자서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위·변조행위를 방지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는 법무대신(大臣)이 지정하는 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이 전자증

명서를 발행하여 공증인의 권한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공증인법 제62조의8, 민법시행법 제7조제1항).

일본의 전자공증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데, 일본의 전자공증체계는 법무장관, 지정공증인, 일본공증인연합회, 전자공증센터, 촉탁인으로 구성된다.

〈그림〉 일본의 전자공증 체계도



일본의 전자공증시스템을 설명하면 전자공증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공증을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공급하는 VPN(공중회선을 전용회선처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을 사용하며, 일본공증인연합회는 동 센터를 소유하고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본 시스템은 PKI(공개키 기반구조)로 구축되었다.

전자공증은 일본공증인연합회가 운영주체가 되고, 법무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공증인연합회는 전국의 공증인회와 공증인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다만, 운용기술에 대해서는 전부를 공증인 사무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술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일본공증인연합회는 NTT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계약하여 기술적 유지관리를 일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공증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객(촉탁인)은 전자문서를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공증을 의뢰한다. 이를 위해 법무성은 사이트에 전자공증사용자를 위한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법무성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수령하고, 공증인이 공증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센터로 송신을 한다. 공증인은 서버에서 사무소의 단말기로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하여 공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전자서명자를 확인한다. 서명자 확인 시에는 공증인 앞에서의 확인이라는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이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공증과 마찬가지로 전자공증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필요한 서명자 확인을 마친 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인증하고, CD 등의 매체에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공증인에 대한 전자증명은 관련 당국이 교부하고 있다. 일본의 전자공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자공증 이용 빈도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실시된 전자공증은 약 58,000건으로, 2004년의 88배에 달한다.⁶⁾

전자공증제도는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관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증 및 확정 일자 부여 사무에 대응하여, 전자적 기록(전자 문서)에 대해서도 전자공증업무를 수행 공증인인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의 인증, 일자 정보를 부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인(당사자)이 법무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했다고 자인(自認)하는 경우에 전자적 기록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⁷⁾

즉, 이 제도는 사서증서의 인증과 같은 공증업무를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지정공증인의 인증은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인지(전자서명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다.⁸⁾ 또한 전자적 기록의 인증에 대해서도 사서증서의 인증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선서인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으로 인증을 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가 지정공증인 면전에서 촉탁에 관한 전자적 기록 내용이 진실하

6) 일본공증인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shonin.gr.jp/> 참조.

7) 조문상으로는 “촉탁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그 사람이 작성한 것임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로 개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작성자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한 것”을 전자서명으로 본다(공증인법 제62조의6 제1항).

8) 이를 통해 전자서명된 전자적 기록이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다는 것을 선서한 후 전자서명을 하거나 또는 전자서명을 했다고 자인한 때는 그러한 취지로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적 기록으로 기록된 정보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일자 정보의 부여(전자 확정일자 부여)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으로 기록된 정보에 일자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일자 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것이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문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제도로서 이용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제3자 대항 요건(일본민법 제467조 제2항)을 구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

3) 인증받은 정보·확정일자가 부여된 정보의 보존·내용 증명

아래의 (1) 또는 (2)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확정일자가 부여된 정보를 보존하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 일반 공증에 있어서 사서증서의 인증 및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부여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저장 및 저장된 내용의 증명(등본의 교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서증서의 인증 및 확정일자 부여의 전자화에 있어서는 파손되기 쉽다는

점 등의 전자적인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나중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1)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를 인증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시점에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여된 시점에서의 전자적 기록의 내용인 정보를 압축하여 얻은 정보(해쉬[hash]값)가 저장되는 것이다(해당 해쉬값에서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없다). 이것은 인증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정보 전반에 대하여 청구에 관계없이 저장된다. 이 정보는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청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보유하는 정보와 인증을 받아,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정보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촉탁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해쉬값과 저장된 해쉬값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2) 인증을 받거나 확정일자가 부여된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저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저장은 청구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정보에 관해서는 나중에 청구에 의해서 이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서면의 교부에 의하여 제공도 가능하다.

3. 전자공증제도 개선

1) 개선 경위

전자공증제도는 당초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상업등기제도에 근거하여 전자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에 한정⁹⁾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개인에 의한 전자적 기록의 인증 부여의 촉탁 및 확정일자 부여 청구(이하 “촉탁 등”으로 총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정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상법등기제도에 근거하는 전자인증 제도 하에서 발행되는 전자인증서 이외에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인증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2004년 3월부터 민간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인증서를 이용한 촉탁 등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선에 앞서 2002년 4월부터 상법 기타 법률의 개정으로 회사 등의 설립 시 생성되는 회사 등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전자적 기록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허용됨과 함께 정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전자공증제도에 의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2) 공적 개인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개선

더욱이 촉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인

증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촉탁 등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인증서 이외에 주민 기본대장의 정보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공적 개인인증서비스’에 전자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정공증인이 공적 개인인증서비스에 전자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검증자’¹⁰⁾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증인에게 공적 개인인증서비스의 서명 검증자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직접적으로는 법무성(법무장관)이 서명 검증에 필요한 실효 정보 등의 제공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공적 개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를 통해 이용하는 방법 이외는 인정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각 부처가 GPKI를 통해 공적 개인인증서비스에 전자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서버가 각 부처 당 1대로 한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증시스템에서 공적 개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법무성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전자공증시스템을 연결하고 법무성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촉탁 등에 전자 공증 창구를 일원화하여 온라인에 의해 촉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이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한편, 법무성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9) 등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전자인증서(일본 상업등기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전자서명에 관한 지방 공공 단체의 인증 업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서명 검증자를 말한다.

폐지에 따라 전자공증 창구는 2012년 1월 10일부터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있다.

III. 전자공증절차

1. 전자적 기록의 인증(정관을 포함하는 사서증서 인증)의 촉탁¹¹⁾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증서 획득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을 하려면 전자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전자공증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인증서는 다음과 같다.

- 상업 등기에 근거하는 전자인증서(전자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전자인증 등기소)
- 공적 개인인증서비스(지방 공공 단체)
- 세콤 패스포트 for G-ID(세콤 트러스트 시스템즈 주식회사)
- 전자인증서비스(e-probatio PS2) (주식회사 NTT 네오메이트)
- ※ 전자인증서 중에는 IC 카드에 내장되어 발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IC카드리더기가 필요하다.

(2) 사서증서를 전자파일로 작성

사서증서를 전자파일로 만든다. 이 전자파일

을 전자적 기록이라고 한다.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을 하는 경우에 제출 가능한 파일의 종류는 전자서명된 PDF 파일(.pdf)이다.((4) 참조)

(3) 공증인에의 연락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을 하기 전에, 촉탁을 하는 공증인에게 전화 또는 FAX로 연락을 한다. 추후 공증인이 촉탁 내용에 미비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것이다.

(4) 전자적 기록의 전자서명 부여

(2)에서 작성한 전자적 기록에 전자서명을 부여한다.

(5) 사전 준비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촉탁인 PC에 설치하는 등의 환경 설정을 하여야 한다.

(6) 신청자 정보 사전등록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의 '신청자 정보등록'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ID,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7) 신청용 종합 소프트웨어 실행

신청용 종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6)에서 등록한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다.



11)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1-2.html> 참조.

(8) 신청서 양식 일람의 표시

‘처리상황 표시’ 화면의 ‘신청서 작성’을 선택하고 ‘신청양식 일람 선택’ 화면의 ‘전자공증’에서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을 선택한다.

(9) 신청서 양식의 작성·저장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 입력 화면이 표시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완료’를 선택한다. ‘저장 확인’ 화면이 표시되므로 ‘예’를 선택하면 신청서 등을 저장한다. 신청서 등이 저장되면 ‘저장 완료’ 화면이 표시되므로, ‘OK’를 선택한다.

(10) 전자적 기록의 첨부

‘처리상황 표시’ 화면에서 ‘파일 첨부’를 선택하면 ‘첨부파일 일람’이 표시된다. ‘파일 추가’를 선택하면 ‘첨부파일 선택’ 화면이 표시되므로 자신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을 저장할 위치를 열고 첨부할 전자적 기록을 지정하고 ‘열기’를 선택한다. 첨부 파일 일람 화면의 첨부 파일 이름 입력란에 선택한 파일이 화면에 표시되므로 ‘저장’을 선택한다.

(11) 전자서명 부여(매체 선택)

‘처리상황 표시’ 화면에서 ‘서명 부여’를 선택하면 ‘서명 대상 신청 일람’ 화면이 표시되므로 대상이 되는 신청서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IC카드 서명’ 또는 ‘파일 서명’을 선택한다.

(12) 전자서명 부여(파일의 경우)

‘파일로 서명’을 선택하면 이용하는 전자인증서 파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므로 촉탁 정보를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PC상에서 사전에 작성·취득한 전자인증서 파일의 위치를 표시하고 전자인증서 파일을 지정한다. ‘열기’를 선택하고 전자인증서에 접근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하면 ‘서명 부여 완료’ 화면이 표시되므로 ‘OK’를 선택한다.

(13) 전자서명 부여(IC카드의 경우)

‘IC카드 서명’을 선택하면 ‘IC카드 연결 확인’ 화면이 표시되므로 IC카드가 올바르게 IC카드 판독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OK’를 선택한다. 전자인증서에 액세스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하면 ‘서명 부여 완료’ 화면이 표시되므로 ‘OK’를 선택한다.

(14) 촉탁 정보의 전송

‘처리상황 표시’ 화면에서 ‘신청서 데이터 전송’을 선택하면 ‘송신 전 신청 일람’ 화면이 표시되므로, 전송 절차(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의 송신 대상 란을 체크하고 ‘송신’을 선택한다. ‘전송 확인’ 화면이 표시되고 ‘OK’를 선택하면 ‘송신 전 신청 일람’ 화면이 표시되므로 대상 신청 데이터의 상태란이 ‘전송 완료’임을 확인하고 ‘닫기’를 선택한다.

(15) 도달 통지의 확인

‘처리 상황 표시’ 화면에서 ‘도달 통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신청서 등이 표시되는 행의 ‘도달’ 버튼을 클릭한다. 도달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리 상황 란에 ‘도달·접수 대기’, ‘심사 중’, ‘절차 종료’, ‘취하 완료’ 중 하나가 표시된다. 또한, ‘도달’을 클릭한 절차의 신청서 등이 오류 등으로 대기·공탁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도달 통지가 표시된다.

(16) 공증사무소 내방

축탁된 전자적 기록의 내용 등에 대해서 축탁을 받은 공증인이 대면하여 심사하고 축탁인이 전자서명을 한 것을 인증하기 때문에 축탁인은 공증 사무소를 찾아 가야 한다.

(17) 수수료 납부

심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전자서명을 부여하게 되지만, 전자서명을 부여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8) 전자적 기록 인증·교부

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전자서명을 부여하고 전자 데이터로 교부하기 때문에, 전자 매체(플로피 디스크, CD-R, CD-RW 또는 USB 메모리)를 지참해야 한다(인터넷을 통해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 확정일자 부여 신청¹²⁾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일자 정보를 부여받는 문서를 전자파일로 작성

일자 정보를 부여받는 문서를 전자파일(.pdf, .xml, .txt 형식)으로 만든다. 이 전자 파일을 ‘전자적 기록’이라고 한다. 확정일자 부여 청구 시 전자적 기록에 전자서명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2) 공증인에의 연락**(3) 사전 준비****(4) 신청자 정보 사전 등록****(5) 신청용 종합 소프트웨어 실행****(6) 신청서 양식 일람의 표시****(7) 신청서 양식의 작성·저장****(8) 전자적 기록의 첨부****(9) 축탁 정보의 전송****(10) 도달 통지의 확인.**

확정일자 부여 청구를 신청하는 것 외에는 전자적 기록의 인증 축탁과 동일하다.

(11) 수수료의 납부

공증인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12)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1-3.html> 참조.

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일자 정보를 부여하게 되지만, 일자 정보를 부여하기 전에 공증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2) 일자 정보의 부여 · 전자적 기록의 취득

공증인이 일자 정보를 부여한 전자적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다(공증 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신청¹³⁾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증서 획득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을 청구하려면 전자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밖에는 전자적 기록의 인증 축탁의 내용과 동일하다.

(2) 전자공문서의 준비

공증인으로부터 전자적 기록의 인증이나 일자 정보를 부여받은 전자공문서(폴더)를 준비한다.

(3) 공증인에의 연락

(4) 사전 준비

(5) 신청자 정보 사전 등록

(6) 신청용 종합 소프트웨어 실행

(7) 신청서 양식 일람의 표시

(8) 신청서 양식의 작성 · 저장

(9) 전자 공문서의 첨부

(10) 전자서명의 부여(매체 선택)

(11) 전자서명 부여(파일의 경우)

(12) 전자서명 부여 (IC카드의 경우)

(13) 청구 정보의 전송

(14) 도달 통지의 확인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의 청구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전자적 기록의 인증 축탁의 절차와 동일하다.

(15) 수수료의 납부

공증인이 해쉬값을 비교하여 저장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와 동일하다면, 그 취지의 증명을 부여하게 되지만, 증명을 부여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6) 증명의 부여 · 전자적 기록의 취득

저장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와 동일한 취지를 공증인이 증명한 전자적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다(공증 사무소에서 취득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정보의 제공 신청¹⁴⁾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증서 획득

동일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

13)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1-4.html> 참조.

14)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1-5.html> 참조.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그밖에는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의 내용과 동일하다.

- (2) 공증인에의 연락
- (3) 사전 준비
- (4) 신청자 정보 사전 등록
- (5) 신청용 종합 소프트웨어 실행
- (6) 신청서 양식 일람의 표시
- (7) 신청서 양식의 작성·저장
- (8) 전자서명의 부여(매체 선택)
- (9) 전자서명 부여(파일의 경우)
- (10) 전자서명 부여(IC카드의 경우)
- (11) 청구 정보의 전송
- (12) 도달 통지의 확인

동일 정보의 제공 청구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의 절차와 동일하다.

(13) 공증사무소에의 내방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촉탁인 등으로 제한되므로 청구를 받은 공증인이 이에 대해 심사하므로 청구인은 공증 사무소에 찾아가야 한다.

(14) 수수료 납부

심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공증인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만, 제공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5) 동일 정보의 제공

공증인이 동일한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데

이터로 제공하기 때문에 전자 데이터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자 매체(플로피 디스크, CD-R, CD-RW 또는 USB 메모리)를 지참하여야 한다(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온라인 촉탁의 한계와 대면확인

위의 각 촉탁 절차를 살펴보면 촉탁자(신청자)는 온라인으로 공증인에게 촉탁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즉, 신청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공증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고 법무성이 마련한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자적 기록의 인증의 촉탁이나 동일 정보의 제공의 청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한 뒤에 공증인 사무소에 실제로 나가 대면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공증인은 직접 방문한 촉탁인에 대한 신원확인 수단으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카드, 그밖의 공적기관의 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IV. 결론

일본의 전자공증체계는 상업등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공증인법과 민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공증인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가 창설되었다. 또한 법무성

령에 따른 「지정공증인이 행하는 전자적 기록 인증에 대한 성령」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 종전의 공증제도는 공증인 모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공증사무를 하였지만, 전자공증은 공증인 가운데 일정한 설비를 갖춘 자, 즉 지정 공증인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는 공증행위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공증인이 종이문서에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던 것에 같음하여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지정공증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인 전자증명서(전자인증서)의 첨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전자공증은 5가지 공증행위에 이용이 가능한데, (1) 전자문서로 작성한 정관을 포함하는 사문서의 인증, (2)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3) 전자공증을 받은 전자문서의 보존, (4) 보존문서와의 동일성 증명, (5) 동일한 정보의 제공(등본의 작성)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정보가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까지 그렇게 실무적으로 대단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공증인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였을 뿐, 공증인이 행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범위나 공증인의 대면요건 등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적으로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가 갖춰져 있으나, 공증인법에 의한 제한 등에 의해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공증을 통해 공증인을 방문하지 않고 적법하고 유효한 공증을 받으려면 현재의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기관을 활용하는 등의 법제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정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전병서,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연구, 2008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8.10.

〈일본공증인협회 홈페이지〉

- 전자공증 절차 관련 사이트 : <http://www.koshonin.gr.jp/de2.html>.
- 공증사무소 소재지 일람 : <http://www.koshonin.gr.jp/sho.html>.

〈일본 법무성 민사국 홈페이지〉

-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
- 지정공증인 일람 :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2.html>.

〈일본 재단법인 뉴미디어 개발협회 홈페이지〉

- <http://www.nmda.or.jp/nmda/commerce/overview/tutorial.html>.